

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4.2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24일 제출
- 회 부 : 1998년 4월 24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,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,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환경보전을 위한 도와 시·군, 사업자, 도민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함 (안 제4, 5, 6, 7조)
-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(안 제11조)
-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 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환경영향검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, 13, 14조)
- 지역환경에 대한 보존원칙을 정함 (안 제17조)
- 환경보전시책 결정, 집행,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반영을 규정함 (안 제19조)
-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와 민간환경단체에 기술지도,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23, 24조)
-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(안 제25조)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,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의 협조관계와 환경보전시책의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조례제정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